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280

발의연월일: 2024. 7. 26.

발 의 자:한지아·백종헌·이인선

안상훈 • 정성국 • 최보윤

김석기 • 안철수 • 김예지

윤재옥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등으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일정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하는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도록 하면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으로 유치원, 학교 및 청소년활동시설 등을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시도교육감에 등록하고 학령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대안교육기관은 취업제한 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아동·청소년이 성범죄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취업제한 명령의 대상이 되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대 안교육기관을 추가함으로써,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보호를 강화하려 는 것임(안 제56조제1항제26호 신설 등).

법률 제 호

도 적용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에 제2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6.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제57조제4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56조제1항제26호의 대안교육기관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56 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를 범하고 취업제한 명령이 확정되는 사람부터 적용하되,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취업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게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햀 개 정 아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에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에의 취업제한 등) ①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 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 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 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 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 거나 집행이 유예 · 면제된 날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 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 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이 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 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 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범 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 (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 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

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 25. (생 략) <u><신 설></u>

② ~ ⑨ (생 략)

제57조(성범죄의 경력자 점검· 후인) ① ~ ③ (생 략)

④ 교육감은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7. (생 략) <신 설>

<u>.</u>
· 1. ~ 25. (현행과 같음)
26.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
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
<u>교육기관</u>
② ~ ⑨ (현행과 같음)
제57조(성범죄의 경력자 점검・
확인) ① ~ ③ (현행과 같음)
4
·
,
1. ~ 7. (현행과 같음)
8. 제56조제1항제26호의 대안교

	<u>육기관</u>
⑤ · ⑥ (생 략)	⑤ · ⑥ (현행과 같음)